

4. 조정사유

최초 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설정되었더라도 문화재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식적인 보호구역의 지정, 혹은 당해 문화재와 일체성·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재조정하여 문화재와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5. 문화재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법적 제약사항

1)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 제21조(허가기준), 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 제24조(신고사항), 제25조(행정명령 및 조치), 제49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제50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허가신청), 제19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함)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함.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94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마포구 상암동 1673번지 건축물 용도 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68호(1997.3.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200호(1998.6.1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230호(2010.2.4) 3공구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82호(2018.3.2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인구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마포구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부족한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구립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설치하고자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용도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상암동 509-7번지 일원	1,690,253.6	-	1,690,253.6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건축물 용도 계획 : 변경

구 분	위치 및 시설명	계획내용	비 고
h1	O1(10) (종교시설)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가’ 목 (아동관련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기정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가’ 목 (아동관련시설) - 노유자시설 중 ‘나’ 목 (노인복지시설) ※ 지정용도 중 종교집회장은 연면적 50%이상으로 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2133-8382) 및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3153-9354), 어르신복지장애인과(☎ 3153-88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